

#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위원회는 대한언어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

제 2조 본 위원회는 대한언어학회 회칙 제6장에 따라 학회 내에 둔다.

## 제 2장 구성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편집간사, 분야별 분과위원장 및 편집위원(이하 '위원')을 둔다.

제 4조 **자격:**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위원은 연구 실적이 지난 5년 동안 1년 평균 100% 이상으로,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학술 활동이 활발한 학자로서, 음성·음운, 통사, 의미·화용, 응용·교육 등 세부 전공 영역별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 5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체 시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유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선발 절차:** 위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1항 위원장: 위원장은 대한언어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발한다.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편집이사를 겸하고, 학회지 편집, 논문 심사의 공정성, 학회지 발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회를 이끈다.

제2항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음성·음운, 통사, 의미·화용, 응용·교육 등 세부 전공 영역별로 1명씩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제3항 위원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의 직책을 가진 임원이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항 회장은 위원 후보의 연구경력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발한다.

제5항 회장은 위원으로 선발된 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촉장을 보낸다.

### 제 3장 기능

- 제 7조 위원회는 대한언어학회의 학술지 『언어학』(*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단 논문심사 기준 이외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제 8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위원 또는 각 세부 전공 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이들에게 의뢰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제 4장 회의

- 제 9조 위원장은 매년 4회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0조 위원장은 매년 4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외에도 언어학에 관련된 도서를 기획 및 발간하는 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1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영역별 분과위원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 제 5장 논문 심사 기준

- 제 12조 **내용의 적절성과 창의성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언어학』에 투고된 논문은 언어학의 세부적인 학술 영역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로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하며 대한언어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조 **형식성.** 『언어학』에 투고된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 14조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투고된 논문은 언어학 연구에 적합한 논리성과 내용전개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 설계, 기존 이론의 비판, 자료의 분석, 자기주장의 제시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연구방법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 15조 **우수논문 시상.** 학회의 논문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줄 수 있다.
- 제 16조 **보고서 양식.**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의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영역과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 양식 제1호(심사 결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 제 6장 논문 심사 절차

제 17조 **발행:** 『언어학』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4회 발간하며, 연1회에 한하여 국제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8조 **논문 접수:** 『언어학』에 실릴 원고는 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대한언어학회 JAMS)을 통해 투고되어야 한다. 『언어학』에 논문투고 시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논문 심사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 받아 논문최종본을 제출할 때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논문최종수정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를 발간할 때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집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고를 받는 대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확인시킨다.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심사 의뢰:** 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 투고 양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논문 1차 심사를 거쳐 영역별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와 투고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낸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

제 20조 **심사 및 보고:** 논문 심사는 투고된 논문의 논문투고양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1차 심사와 논문 내용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진행한다. 논문 심사는 재심까지 허용하고, 아래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삼심을 진행한다.

제1항 투고된 논문에 대해 1차 심사로서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가)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나) 논문 투고양식의 준수 여부
- 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차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JAMS 상에서 '접수거부'로 처리한다.

제2항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2차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영역별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투고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와 투고 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보낸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제3항~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제4항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요구 사항을 '심사결과보고

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5항 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면 아래 제21조에서 규정한 평가점수의 합에 따라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되 '게재'와 '게재 불가'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 위원장이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 후 제출을 요구하면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도 평가점수의 합으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을 경우 삼심을 허용하지 않고 편집회의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에서 심사위원 3명 중 1명만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고 심사위원 2명은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에만 삼심을 허용한다.

제7항 초심이나 재심에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게재 불가'로 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의 의결을 통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제 21조 편집 회의

제1항 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위원이 보내 온 심사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는 "게재(4점), 수정 후 게재(3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 불가(0점)"와 같이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점수의 합이 11점 이상이면 '게재', 7-10점이면 '수정 후 게재', 3-6점이면 '수정 후 재심', 2점 이하이면 '게재 불가'로 판정을 한다.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평가점수의 합으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정한 수정논문 제출 기한을 90일이 경과하도록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후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제 22조 결과 통보

제1항 위원장은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1주일 안에 송부한다.

제2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제1저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새로운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60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제1저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 제 23조 게재 제한

제1항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또는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

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필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논문 게재를 제한한다.

제2항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논문 게재를 제한한다.

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나 수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다) 수정 또는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 학회지 지면의 효과적인 배정을 위하여 동일인이 3회를 연속해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금한다.

제 24조 **심사 및 게재료**: 투고 시에는 학회지의 원고작성 양식에 맞추어 편집된 원고와 함께 심사료(60,000원)를 학회에 입금한다. 심사 후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수정된 논문과 함께 게재료(일반논문: 200,000원+초과 쪽당 1만원, 연구비 수혜논문: 300,000원+초과 쪽당 1만원)를 학회에 입금한다. 단 해외 투고 논문과 대학원생이 단독으로 투고한 논문은 심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제 25조 원고의 투고와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언어학회 ‘언어학 투고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부칙

제 26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